

18세기 후반 프랑스 헌법사상의 현대적  
수용-국민주권, 인민주권과  
참여민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Cette signification contemporaine  
des idées de la Constitution  
française à la fin de XVIII ième  
siècle

• 정종길 (Chung, Jong-gil)

• 학위취득대학 : 파리1대학교(univ-paris1)

• 현직 : 경기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 대표저술 >

“유럽인권재판소에 의한 기본권보장체계와 개인소송(차수봉)” 토지  
공법연구 (2007).

“La garantie constitutionnelle des droits sociaux en Corée, 한국  
에서 사회권의 헌법적 보장”법학연구 (2007).

“우리 통치구조 기본원리에 수용된 18세기후반의 프랑스헌법사상,”  
세계헌법연구 (2006).

관심분야 : 유럽헌법, 프랑스법, 헌법재판, 기본권

E-mail : parisjkk@hanmail.net

논문접수일 : 2008년 3월 20일

논문심사일 : 2008년 4월 2일

게재확정일 : 2008년 4월 16일

# 18세기 후반 프랑스 헌법사상의 현대적 수용-국민주권, 인민주권과 참여민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

## I. 서론

국가 공권력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근대입헌주의헌법 개념의 사상적 기원은 절대주의의 구체제(Ancien Régime)를 타파하고 자유평등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 전형적인 시민혁명이라 일컬어지는 1789년 프랑스혁명이다. 특히 그 혁명의 영향으로 1789년 8월 26일 가결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은 사회 안에서 개인의 새로운 위치를 표명함과 동시에 확언함으로써 진정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 개념을 정립하였다.<sup>1)</sup>

이 선언은 18C 프랑스에서 풍미하였던 계몽주의 사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루소의 인민주권과 일반의지, 시에예스의 국민주권과 합헌성통제제도 및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선언의 정신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철학자가 있다면 그것은 루소, 시에예스, 몽테스키외의 일 것이다.<sup>2)</sup>

한편 그들의 사상은 근대입헌주의 헌법의 초석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양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통하여 민주주의와 인간존중의 사상이 강화되고 사회화의 경향이 촉진되면서 나타난 오늘날의 현대복지국가 헌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참여민주주의 등에도 크게 영향을 주었다.

1)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6조에서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분립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Toute société dans laquelle la garantie des droits n'est pas assurée, ni la séparation des pouvoirs déterminée, n'a point de Constitution).”라고 규정함으로써 근대적 입헌주의 헌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Philippe Ardant, Institutions politiques & Droit constitutionnel, L.G.D.J., 7e édition, 1995, p.150.

2) Stéphane Rials, Le mystère des origines, la Déclaration de 1789, Droits, n° 8, 1988, p.12.

### <국문요약>

루소가 주권은 일반의지의 행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도나 대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할할 수도 없으므로 주권은 유권자 총체에 있다는 '인민주권(la souveraineté populaire)'론과 직접민주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시에예스는 nation(국민)이란 구체적 개개인의 총체가 아니라 이념적, 추상적, 초월적, 선형적인 하나의 실체로서 정치적 유권자단체 또는 선거인단이기 때문에 '국민주권(la souveraineté nationale)'론에서는 필연적으로 대표제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우리헌법 제1조 제2항은 개개국민은 직접적으로는 현실적인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그 대표자에 의해서만 스스로를 구체화하여 표현할 수 있는 추상적 통일체이며 그를 형성하는 구성원들의 단순한 총체가 아니라 그들 전체에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공동체적 실체로서 권력과 국가적 제권리의 주체이며 개개 구성원들을 초월한 최고이며 독립한 권력의 보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오늘날 참여민주주의가 활성화 되는 시점에서 인민주권적 요소인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은 오히려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는 시에예스의 이론에 거의 일치하지만 직접민주주의적 요소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차후에는 루소적 주권론을 새롭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주 제 어 ] 국민주권, 인민주권, 참여민주주의, 반대표제, 한국헌법**

\* 본 연구는 2006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신진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그래서 본고에서는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헌법사상, 특히 루소, 시에예스, 몽테스키외 등<sup>3)</sup>의 주권이론들을 총체적,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것이 현대헌법상의 주요이론인 참여민주주의론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II. 주권의 본질

주권은 한 국가에 있어서의 주인된 권력이라는 점에서 최고의 권력이며 동시에 국가권력 그 자체와 혼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국가권력은 주권자가 제정한 헌법의 수권에 따라 부여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력이다. 따라서 주권과 헌법제정권력 및 통치권력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고 그 이론의 근본적인 원류인 루소의 인민주권론과 시에예스의 국민주권론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그 이론들이 현대헌법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주권이론의 정립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의 헌법은 주권에 관한 규정을 첫 조항에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주권에 관한 문구는 헌법학 연구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권의 개념은 불분명하고 다의적이다. 그래서 주권의 특성과 이와 유사한 개념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 (1) 주권의 특성

오늘날 헌법은 불가양성(inaliénabilité), 불가분성(indivisibilité), 무

3) 18세기 후반 이들의 헌법사상에 관하여는 정종길, “우리 통치구조 기본원리에 수용된 18세기 후반의 프랑스 헌법사상,” 세계헌법연구, 제12권 제1호,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06, p.83이하 참고.

오류성(intallipilité), 절대성(absoluté)을 주권<sup>4)</sup>의 네가지 특성으로 보고 있다.

첫째, 불가양성(inaliénabilité), 권리는 이전할 수 있어도 의지는 이전할 수 없다고 한다.<sup>5)</sup>

둘째, 불가분성(indivisibilité), 국가의 일반의지는 주권이므로 주권은 불가양적이라 하여 주권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sup>6)</sup>

셋째, 무오류성(intallipilité), 주권은 오류를 범하지 않고 무오류성 즉 안전성에 이른다.<sup>7)</sup>

넷째, 절대성(absoluté), 주권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절대적 권력을 갖는다.<sup>8)</sup>

### (2) 주권, 헌법제정권력, 통치권

4) 이러한 점에서 현대헌법이 지향하는 주권이론의 창설자는 장 보댕(J. Bodin)이라 할 수 있다. 주권을 “절대적이고 항구적인 권력 (puissance absolue et perpetuelle)”이라고 정의하였다. J. Bodin, Les six livres de la République, Livre I, chapitre VIII, p.122.

5) 루소는 현실적으로는 의지가 이전되어 있었으나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였으므로 그는 영국의 의회정치에 반대하고 직접민주정치를 주창하였던 것이다. 또한 주권을 양도함으로써 부여되는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입헌군주제를 반대하였다. J.J. Rousseau, Ecrits politiques, Librairie Générale Française, Livre de poche, n° 4604, 1992, p.234.

6) 루소는 국가의 기관을 다만 주권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는데 그 기능의 한계를 두었다. J.J. Rousseau, Ecrits politiques, Librairie Générale Française, Livre de poche, n° 4604, 1992, p.235.

7) 루소는 주권은 일반의지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체시민의 의지는 항상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J.J. Rousseau, Ecrits politiques, Librairie Générale Française, Livre de poche, n° 4604, 1992, p.235.

8) 루소는 주권은 사회계약에 의하여 구성된 국가의 일반의지이므로 주권의 절대성은 그 타당한 근거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J.J. Rousseau, Ecrits politiques, Librairie Générale Française, Livre de poche, n° 4604, 1992, p.235.

오늘날 현대헌법에서 주권은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주권에 기초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최고의 법인 헌법이 제정<sup>9)</sup>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헌법의 제정권자가 바로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권과 시원적 제한권을 동일시하는 경우<sup>10)</sup>도 있으나, 주권으로부터 헌법제정권력이 도출되기 때문에 주권은 헌법제정권력보다 상위의 개념<sup>11)</sup>이다. 왜냐하면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로 모든 국가의사가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은 그 자체가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국가의사이기도 하지만, 헌법은 또한 구체적인 국가의사를 결정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헌법제정권력이 행사되고 난 이후에도 구체적 사안에서 주권행사의 필요성이 계속 요구되는 것이다. <sup>12)</sup>

9) 현대민주국가에서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방법은 첫째, 루소의 직접민주주의에 충실하여 국민이 국민투표 등으로 직접 이를 행사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시에 에스적인 대의민주주의의 요청에 따라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들로 하여금 헌법제정국민회의를 구성하고, 이 제현의회로 하여금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화하는 방법이 있고 셋째, 두 방법을 혼용하여 국민투표와 대의기관을 통하여 행사하는 방법이 있고, 넷째, 연방국가의 경우에 볼 수 있는 특이한 유형으로 연방을 구성하는 지분국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p.46.

10) 권영성교수는 헌법제정권력을 “정치적 공동체의 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규범체계화하는 권력 으로 이해하고, 주권을 국가의사와 국가적 질서를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으로 이해한다면, 양자 모두 최고의 권력이라는 의미에서 공통성을 가지므로, 양자를 동일한 권력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하고 있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p.48. 동지; 구병삭, 신헌법원론, 박영사, 1995, p.171, 강경근, 헌법학, 법문사, 1997, p.117.

11) 성낙인교수는 “한 국가의 최고의 권력과 권위는 주권으로부터 비롯된다. 바로 그 주권을 향유하는 자가 한 국가의 새로운 법질서를 창출하는 시원적 제한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시원적 제한권은 주권자가 향유하는 권력이다. 그런 점에서 주권과 시원적 제한권은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될 수도 있지만, 그 연원상 주권으로부터 시원적 제한권이 비롯된다”고 하고 있다.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8, pp.40-41. 동지; 김철수,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3, p.129.

한편 통치권은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권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권력을 협의로 이해할 때에는 이 통치권력과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통치권력은 오늘날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주권을 행사한다. 즉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최종적인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주권의 주체이다.<sup>13)</sup> 다만 이 통치권력은 권력의 남용과 악용을 막기 위하여 기능에 따라 입법기능·행정기능·사법기능 등으로 분할되어 행사된다. 그러나 통치권력이 분리되어 행사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 정치적인 통일체로서의 국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통치권력도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궁극적으로 불가분적으로 통합되어 행사되는 것이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 2. 주권과 민주주의론

주권의 주체와 행사방법을 정하는 주권제도에 관한 논쟁으로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본질적 실체를 살펴보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경험적 민주주의론과 혁명적 민주주의론을 구별하려 한다.

### (1)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

주권의 본질을 최고독립성, 불가분성, 불가양성, 시원성과 자율성, 항구성 등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nation주권론이나 people주권론은 공통적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공동생활의 가능성의 조건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공동의사의 형성과 실현에서 찾고 있는 점도 공통적이다. 그렇지만 주권적인 공동체와 공동의사의 구성 및 형성은 서로

12) 강경근, 한국에서의 국민주권론의 위상, 고시계, 1990.3., pp.63-64.

13) 이승우, “국민주권의 본질과 국민주권원리의 재고찰”, 공법연구, 제32집 제4호, 2004, p.229.

상이한 세계관 위에 기초되어 있다.

국민주권론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들이 공동생활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로 결합된 상태이고 주권의 주체는 이러한 상태의 국민이라는 의미의 전체국민이다. 이러한 의미의 전체국민의 구성은 국가가 주체성을 보유하기 위한 선험적이고 형식적인 조건이다. 이러한 선험적 형식 자체에 머무르는 한에서 전체국민의 의사, 즉 주권의의사는 자신의 실체내용을 아직은 보유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상태에 머무른다. 이러한 추상적 의사의 주체로서의 이념적 통일체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의사를 실제로 형성할 수 있는 한에서 국민은 의미 있는 주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한편 인민주권론은 공동체구성을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전체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존재로서의 개인들을 지칭하는 *people*로부터 시작한다. 물론 *people*주권론에서도 전체가 주권적 지위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주권적 지위, 즉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는 이러한 하나의 공동의지를 Rousseau는 일반의지(*volonté générale*)라 지칭한다. 다시 말해서 루소는 일반의지로부터 인민주권의 개념을 추출하고 있다. 국가를 지탱시키는 공동의 힘과 그것을 지도하는 일반의지가 상호 적용되면서 주권이 구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권은 특정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공동으로 법을 제정할 자격을 지닌 전체공동체의 인민에게 귀속된다.

결국 *nation*주권론은 국가를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전체가 대표를 통해서 국가를 스스로 현상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people*주권론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개인들이 전체에 통합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 (2)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동일한 민주주의의 이론내에서도 그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과 과정을 둘러싸고 중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민주주의를 대의민주

주의<sup>14)</sup>와 직접민주주의<sup>15)</sup>로 구분할 때 전자는 국민주권론과 후자는 인민주권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들 두 개념은, 산업적 증산층을 그 담당세력으로 하고 있고 절대주의에서 해방된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천부의 인권을 그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는 민주주의의 하위개념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대립되거나 아니면 그 역사적 조건을 달리하는 전체주의나 독재주의와는 완전한 구별되는 개념들이다. 따라서 이들 두개의 민주주의의 개념은 자유와 평등 및 천부의 인권을 인정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과 과정에 있어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차이를 몇가지 점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서로 강조하는 측면을 달리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제도와 과정 즉 형식을 중요시하는 반면에 직접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목적과 내용, 즉 실질을 중요시 한다.<sup>16)</sup>

14) 대표민주주의는 두 개의 형태의 입각하여 작동되고 있다. 그 하나는 순수대표형이다. 순수대표제에서 국민은 직접선거나 간접선거를 통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할 뿐이고, 국회가 집행권을 지명하고 통제한다. 대표민주주의의 두 번째 형태는 국민이 국회의원뿐 아니라 집행권의 수반인 국가원수도 보통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제도이다.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8, p.141.

15)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는 칸톤에 있는 주회(Landesgemeinde)이다. Landesgemeinde는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인민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시민을 소집한다. Landesgemeinde의 회기 중에 시민들은 대표자를 선출하고, 헌법상 문제점들을 처리하고, 법률안을 토론하여 표결할 뿐 아니라 중요한 행정사항도 처리한다. 이는 매우 민주주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회기가 지나치게 짧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들을 대표기관에 위임한다든가 거수투표를 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8, p.140.

16) 즉, 전자에 의하면 민주주의란 근대헌법국가를 특정 지우고 있는 권력분립·다수결원리·의회제도·복수정당제 등을 포함하는 하나의 정치형태 내지는 제도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정치형태 내지는 제도라는 형식적 요건만 완비된다면, 그로부터 실제로 누구를 위한 어떠한 정책이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

둘째, 그들은 정치를 보는 태도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대의민주주의는 원칙적으로 현상을 유지 시킨다는 입장에서 정치를 하나의 시행착오의 과정으로 보는 반면에 직접민주주의는 원칙적으로 부단히 현상을 변혁시켜 나간다는 입장에서 정치를 하나의 민주주의적인 원칙, 즉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sup>17)</sup>

셋째, 그들은 입장을 보는 입장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대의민주주의는 미리 인간의 개인의 생명, 자유 및 재산을 국가권력보다 먼저 존재한 불가침의 권리를 전제해 두고 국가권력은 이러한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이에 반해, 직접민주주의는 국가의 기능을 사회형성기능으로 보아 국가권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국가권력에 의해서만 개인과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sup>18)</sup>

---

디카지나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므로 민주주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한다. 반면에 후자에 의하면 민주주의란 절대주의의 폐단과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다수민중들의 자유와 평등 및 천부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에서 중요시 하고 있는 A외형적제도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현하려는 목적과 내용이 더 큰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여러 외형적 조건이 무시되더라도 민주주의의 여러 기본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 실시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본다.

- 17) 전자는 민주적인 제도와 개인의 자유 및 창의를 토대로 하여 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경험적인 방법으로 서서히 개선해 나가는 것을 민주정치라고 본다. 이와는 달리 후자는 정치에 있어서 실현해야 할 단일의 원리 내지는 완벽한 사물의 틀을 미리 정해 두고 그것을 혁명적인 방법으로 달성해 가는 것이 민주정치의 기능이라고 본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적인 요구나 이익집단을 비롯한 중간적인 단체들의 작용은 전체의 공동이익과 단일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철저히 배격해야 하며 정치의 목적은 오히려 그러한 작용을 배제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있는 것으로 본다.
- 18) 전자는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이기심을 토대로한 자연권이며 또 그것을 신장하기 위한 자유로운 활동과 창조력의 발휘이다. 국가권력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이며 외형적인 것에 불과하고 국가의 발전은 오직 원자화된 개인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고 한다. 반면 후자는 국가권력이란 국민의 일반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중요하고 절대성은 가질 뿐만 아니

결국 대의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의 대립관계에 있어서, 민주주의 세력의 우위만 보장된다면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세력과도 타협함으로써 모순된 관계도 유지시키면서 서서히 개선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일종의 타협의 이론이며 반면에 직접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의 대립관계에 있어서 철저한 대결과 투쟁을 통하여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세력과도 모순된 관계를 말끔히 청산하는데서 민주주의는 이룩될 수 있다고 보는 일종의 혁명의 이론인 것이다.

이들 민주주의에 대한 두개의 개념은 그 이후로도 여전히 민주주의사회 내부에 있어서 상당한 입장의 차이를 나타내왔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이른바 신생독립국가들의 민주화과정에 있어서 이들 두 개념은 상당히 큰 실제적 영향을 미쳐왔다. 신생독립국가의 대부분이 봉건상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경우, 민주주의세력이 직면한 가장 문제는 국내의 봉건세력과의 관계였기 때문이다.

### III. 현대헌법상의 참여민주주의의 문제

근대민주주의 이론의 변화<sup>19)</sup>에 따라서 민주주의를 단순한 하나의

---

라, 전체의 공동이익에 위배되는 개인의 갖가지 반사회적인 이기심의 발로와 작용을 억제하며, 미리 정해진 완벽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국가권력을 생각하는 것이다.

- 19) 근대민주주의는 ‘국가가 최고의 선이고 사회는 그 그림자’라는 절대주의적 국가관이 아니라, 사회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국가는 ‘필요악’이라는 자유방위적인 국가관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그것은 사회와 국가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개인의 합리성과 개인간의 동질성을 토대로 자유·평등한 개인들이 선거를 통하여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가 사회를 대표하여 정치를 사실상 담당하는 정치통합의 도식으로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첫째,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기술문명의 발달에 따른 사회의 분화·이질화와 빈부의 격차로 빚어지는 복잡한 사회문제 등은 국가권력으로 하여금 더 이상 ‘정치’의 영역에만 머무를 수 없게 하였다. 그래서 국가는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관료국가를 형성하였다. 둘째, 산업혁명이후 고도의 발전을 달성한 후기 자본주의는 대기업과 대자본의 형성을 가져왔고,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계열화 및 대기업과 국

지배 내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해방’을 그 대상으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참여이론이 성립되게 되었다. 이러한 참여이론<sup>20)</sup>은 현대의 대조직 사회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자유와 평등의 조건과 그 존재양식을 문제로 삼으며, 단순한 ‘현실주의적’ 민주주의이론의 시대분석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명백히 규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대헌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참여민주주의이론<sup>21)</sup>에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헌법사상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1. 우리 헌법상의 주권에 대한 해석

### (1) 이론적 해석

우리 헌법도 국민주권의 이념을 가장 중요한 근본이념으로 하고

---

가권력의 밑착에 의하여 권력엘리트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권력엘리트는 자신의 목적을 마치 사회적 목적에 의한 것처럼 변질되기도 하였다.

20) 김세균교수는 1990년대 초반의 한 논문에서 페이트만(Carole Pateman), 맥 퍼슨(C. B. Macpherson) 등이 제기한 1970년대 참여 민주주의론을 부르주아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과두제적 지배’라는, 자유주의자들 역시 부인하기 어려운 현상을 극복하려는 이론적 시도로 평가한다. 그는 이러한 이론적 시도가 자유민주주의자의 가장 좌파적인 견해를 대변한다고 하더라도, 이 이론은 국가와 융합된 독점자본의 금융적 과두지배라는 자본주의 발전이 가져오는 필연적인 산출물을 정치적 민주주의의 단순한 확대심화로 극복하려는 이상주의적 자유민주주의론이라는 한계를 지닌 것이라고 평가한다. 김세균,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본질-한계, 한국정치연구회 사상분과 편저, 현대민주주의론 I, 창작과비평사, 1992, p.329.

21) 참여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저작으로는 참여사회연구소 편,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창작과 비평사, 1997. 물론 1990년대 초반부터 구(舊) 유고의 자주적 생산관리제도라든가 스페인 몬드라곤의 협동조합운동이 지향한 산업민주주의에 대한 관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관심들은 한국에서의 참여 민주주의의 담론 형성에 계기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몬드라곤의 산업민주주의 운동에 일찍이 주목한 법학논문으로는 광노현, 협업기업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법제, 제317호, 1990.10., pp.6-21 참고.

있다. 헌법이 전문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제정하였음을 밝힌 것이나,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 것은 국민주권의 이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규정은 군주주권론, 국가주권론, 법주권론 등을 배제하고 국민주권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우리 헌법질서의 근본적 이념의 표명이다.

주권적 의사의 현실적 구현, 즉 주권의 행사는 스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직접민주주의), 현실적으로 이를 직접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 기술로써 대표자를 통하여 행사한다(간접민주주의).<sup>22)</sup> 대표자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 그리고 오늘날은 대의민주주의를 통한 실현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 참정권(제24조와 제25조)을 바탕으로 하고, 민주적 선거법의 기본원칙(제41조 제1항)과 지방자치치를 위한 선거제도(제118조) 등을 마련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국민주권이념을 실현하고 있다.

### (2)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구)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 위헌심판제청에서 “헌법상의 국민주권 원리가 형식논리에 급급하여 그 본질이 제대로 해석 적용되지 못하고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에 실제적으로 충분히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한 이유를 먼저 살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본질적인 이유는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헌법체제하에서의 국민주권론은 실질적인 국민주권론이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국민주권론을 합리화하는데 공헌하였으며, 국

---

22) 이승우, “국민주권의 본질과 국민주권원리의 재고찰”, 공법연구, 제32집 제4호, 2004, p.231.

민대표론은 민의를 실제로 반영하는 현대적 대표론이 되지 못하고 민의와 동떨어진 권력의 자의적, 독단적 행사만을 합리화하는 전근대적 대표론에 머무르고 있는 점이 적지 않았다. 헌법이 국가의 현실적인 정치제도와 국민의 사회적 생활속에서 활용되고 본래의 취지대로 법률적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그에 맞는 해석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sup>23)</sup> 라고 결정한바 있다.<sup>24)</sup>

## 2. 실질적 주권행사방법

현행헌법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동시에 대의민주주의의 병폐를 보완하기 위하여 직접민주제적인 국민투표제도<sup>25)</sup>로서 국민투표부인권(제72조),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권(제13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의제 민주주의, 혹은 의회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탈의회주의적 거버넌스<sup>26)</sup>, 참여 민주주의, 혹은 “유기적 민주주의”가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로 확립되고 있는 것이다.

23) 헌재 1989.09.08. 88헌가6, 판례집 1, 199,199-199.

24) 이러한 점에서 루소가 제시한 시민적 참여의 전제조건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참여는 작고 개관가능한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상대적인 사회적 동질성이 공동의 기본적 합의에 기여하고, 극복하기 불가능한 이해충돌이 없어야 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자립성이 있어야 한다. Josowic, Larissa, Partizipation in Lokaler Demokratie, Köln 2003, S. 18f.

25) 실제로는 국민투표는 완전한 직접민주주의도 아니다. 그 이유는 발안자의 의사나 반대자의 의사를 정확히 대변하지는 아니하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었어야 하는 국가위기의 해결과 정치과정의 공개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론분열상황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는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있다. Butler, David and Ranney (eds), Referendums round the world, New york : Macmillan, 1994, p, 263

26) Tom Burns, *The Future of Parliamentary Democracy: Transition and Challenge in European Governance*, 2000. 출처: 저자의 홈페이지 ([http://www.soc.uu.se/staff/tom\\_b.html](http://www.soc.uu.se/staff/tom_b.html))

### (1)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

대의민주주의는 치자가 동시에 피치자가 되는 국민의 자기통치제도가 아니고 치자와 피치자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치자에게는 “정책결정권”과 “책임”을 그리고 피치자에게는 “기관구성권”과 “통제권한”을 부여하는 구성원리이다. 또한 대표관계는 자유위임(무기속위임)관계를 그 본질로 하기 때문에 대표기관의 정책결정이 설명 국민의 의사에 반하다고 하더라도 다음 선거 등에 의해서 그 책임과 신임을 물을 때까지는 당연히 국민을 기속하고 국민의 추정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sup>27)</sup>

따라서 대표의 원리를 제도화하는데 있어서는 극단적인 직접민주주의를 단순히 배척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대표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신임과 책임 그리고 통제와 절제의 이념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 참여민주주의 도입을 위한 모색

첫째, 오늘날 국민투표<sup>28)</sup>에 대한 비판을 대면해 보면 국민투표의

27) 장용근, 직접민주주의규정의 헌법개정에 대한 검토, 헌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2006.11., pp.568-570

28) 국민투표에 제도적 장점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국민투표가 의회주의(le parlementarisme)를 민주화한다는 것이다. 의회는 더 이상 주권기관이 아니며, 더 이상 일반의사 형성권(le pouvoir de formuler la volonté générale)을 독점할 수 없다. 의회와 결합적으로 시민들(le corps des citoyens)도 국민발의(l'initiative populaire)의 수단에 의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투표는 법규범의 체계를 재확립하며 의회를 헌법에 종속시키게 한다는 것이다. 의회는 더 이상 헌법을 지배할 수 없으며 역으로 헌법에 의해 의회가 지배되어질 것이라는 의미에서 법률사항적 국민투표제도는 사실상 헌법사항적 국민투표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국민투표가 시민들로 하여금 정당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그들의 일체감을 재발견하게 한다는 것이다. 의회위원의 선거에서 특정한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정당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투표했던 시민도 국민투표에서는 특정문제에 대하여 순수한 개인적 의식의 발로로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성격이 지배자의 통치수단으로서의 정치적 무기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과 국민투표에 대한 국민의 보수적 경향을 들 수 있다.<sup>29)</sup> 이러한 무기의 행사를 위한 발의권을 집권세력의 특정기관에 독점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sup>30)</sup> 따라서 국민투표발의권을 스위스나 미국에서처럼 시민에게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보수적 성향에 대하여는, 시민이 이해 가능한 형태로 문제를 정리하여 간이, 명확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통해 국민투표 참여율도 함께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민소환제도<sup>31)</sup>는 우리헌법 제7조의 3항에 규정할 필요성이

이다. 박인수, 프랑스헌법사상과 한국헌법의 정체성 및 헌법개혁, 헌법학연구, 제12권 제3호, 2006.09, pp.125-126.

29) 박인수,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 이론적 연구, 공법연구, 1991.6., p.47.

30)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5차례의 헌법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한 마디로 말해서 1962년 제3공화국 헌법, 1972년 유신헌법,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의 제정국민투표는 국민투표의 존재이유를 무색케하는 것이었다. 즉 1962년 헌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만을 거친 것 이었으며 1972년 헌법은 비상국무회의를 거쳐서 제안된 것이어서 국회심의를 없었던 것이다. 이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영향 하에 있었던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거쳤을 뿐인 1980년 헌법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본래적인 헌법국민투표의 의미보다는 제안자의 신임과 관련된 Plébiscite로서의 전략만을 볼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한 면은 1969년 3선 개헌 국민투표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987년 헌법국민투표가 여야 합의로 국회심의를 거쳤다는 점은 진전됐다고 보며 순수한 Referendum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유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후진국가와 전제국가 및 권위국가 등에서 국민투표가 시행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선전과 압력에 의하여 국민을 더 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전제국가의 국민투표는 Referendum이기보다는 Plébiscite로 되고야 한다.

31) 우리헌법에서는 1954년 2차 개헌에 의해서,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 국민발안을 규정한 바 있다. 현행 헌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발안을 도입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헌법 제2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민주주의와 국민발안이 완전히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어 일방의 선택이 타방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경우이나, 의회민주주의가 국민발안을 배제해

있는데 특성상 우선“선거직공무원의 소환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위임한다.”라는 규정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할 경우 72조의 국민투표의 범위에 관련하여 노태우대통령이나 노무현대통령의 신임국민투표의 논란도 헌법규범적으로 해결되고 국민의 의사에 합치되는 지도자의 행태의 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sup>32)</sup>

국민발안제도<sup>33)</sup>는 우리헌법 제52조의 규정에 “법률이 정하는 일정요건의 국민”도 포함시키고, 동일한 규정을 72조에 역시 규정하고 128조 에도 동일한 규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52조 규정에 국민발안에 대해서 국민투표규정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경우 법률의 제정이외에 법률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발안과 투표는 현행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야만 정치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국민발안의 금지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2) 이경주, 유권자의 권리 찾기 국민소환제, 책세상, 2005, p.97 아래 참고. 한편 박병섭은 “대의제원리에서 대표개념은 논리적으로 이미 주어진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는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하면서 “헌법이 대표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유권자에 대한 대표자의 기속적 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게 된다”고 한다. 박병섭, 대의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민주법학, 제14호, 1998, p.147.

33) 국민소환은 직접민주제의 한 제도로서 국민발안의 의사에 기하여 임기만료 이전에 공직에 있는 자를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탄핵과의 차이점은 국민의 의사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대통령을 임기만료 전에 의회제안 국민투표로써 해임할 수 있게 하였으며 미국의 각 주에서도 시장이나 의원, 법관 등에 대한 국민해직을 인정하였다. 스위스에서 일부 주에서 채택되었으나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구병석, 탄핵과 국민파면제도, 월간고시, 1974.8., p17.

## IV. 결 론

현대국가에서도 국가는 대내적으로 제사회세력들의 끊임없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안정을 확보해야 하며, 대외적으로도 국가는 국가간의 관계와 국제조직과의 관계에서 주권국가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헌법학에서 주권개념을 부정하거나 개념정의를 포기하면서 국가를 논의할 수 없다. 이러한 주권개념은 특히 18세기의 후반 프랑스 헌법사상에서 활발하게 되었고 그 이론은 20세기 후반 참여민주주의라는 흐름을 대표하는 이론으로서 새롭게 탄생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참여에 대한 개념은 대체로 민주주의 개념과 관련하여 두 가지 입장에서 분류를 할 수 있다. 근본적이고 직접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고전적인 참여”를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경쟁적이고 대의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대의적 참여형태를 주장한다. 전자를 민주적 참여(democratic participation), 후자를 지지참여(support participation)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참여민주주의는 시에예스의 대의민주주의에 바탕을 두면서도 국민투표나 국민소환, 국민발안 등과 같은 제도화된 방법을 통하여 루소의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sup>34)</sup>

결국 완전한 직접민주주의나 완전한 간접민주주의는 그 나름대로 소위 독점에서 오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에 배치될 수 있는 제도들이기에 반대표제가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34) 참여 민주주의를 사회주의 모델과 자유주의 모델로 구분하고 참여민주주의는 좌익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며 자유민주주의와도 결부될 수 있다는 견해는 대체로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박인수, 한국의 참여민주주의와 주민투표의 과제, 국제인권교육연구, 제5권, 2003 참고.

## < 참 고 문 헌 >

- 강경근, 1990, 「한국에서의 국민주권의 위상」, 『고시계』, 3.  
구병삭, 1990, 「국민주권의 행사방법론」, 『고시계』, 3.  
구병삭, 1974, 「탄핵과 국민파면제도」, 『월간고시』, 8.  
권형준, 1998,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의 현대적 의의」, 『공법연구』, 26집 3호,  
김강운, 1996, 「주권개념에 관한 연구」, 『헌법학 연구』 제2집.  
김상겸, 2001, 「인민주권론의 원류」, 『헌법학연구』 제7권 제3호.  
김명운, 2002, 「몽테스키외의 정치사상에 나타난 미덕과 자유의 신념」, 『프랑스어문교육』, vol.14, no.2,  
김세균, 1992,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본질·한계」, 한국정치연구회 사상분과 편저, 『현대민주주의론 I』, 창작과비평사.  
남궁승태, 1993, 『프랑스헌법소송』, 도서출판 삼선.  
민경식, 1992, 「시에예스의 헌법제정권력이론」, 『고시연구』, 3.  
박병섭, 1998, 「대의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민주법학』, 제14호.  
박인수, 1990, 「국민주권과 인민주권」, 『고시계』, 3.  
박인수 (역), 2003,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E.J.Sieyes., 『책세상』, no. 33.  
박인수, 2003, 「한국의 참여민주주의와 주민투표의 과제」, 『국제인권교육연구』, 제5권.  
박인수, 2006, 「프랑스헌법사상과 한국헌법의 정체성 및 헌법개혁」, 『헌법학연구』, 제12권 제3호, 09, pp.125-126.  
박진완, 2001, 「민주주의개념의 전개와 인정의 문제」, 『공법학연구』, vol.3 no1., 한국비교공법학회.  
박진완, 2000, 「법치국가에서의 권리보장의 문제」, 『헌법학연구』, 제6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방승주, 2003,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 『공법연구』, 제32집 제2

호.

변해철, 1997,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과 형사법상의 일반원칙」, 『외법논집』, 제4권 1호,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변해철 (역), 1999,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J.Morange, 탐구당.

성낙인, 1995, 『프랑스헌법학』, 법문사.

성낙인, 1994, 「권력분립론」, 『고시계』, 9.

오동석, 2001, 「참여 민주주의론에서 기본권과 민주주의」, 『법과 사회』, 제21호.

이경주, 2005, 「유권자의 권리 찾기 국민소환제」, 『책세상』,

이명성 (역), 2003, 『법의정신』, C. de S Montesquieu, 홍신문화사.

이승우, 2004, 「국민주권의 본질과 국민주권원리의 재고찰」, 『공법연구』 제32집 제4호.

이종수, 2005, 「참여 민주주의 실현과 국가경쟁력」, 『세계헌법연구』, 제11권 제1호.

이태일 외(역), 1994, 『사회계약론』 외, J.J.Rousseau., 범우사.

장영수, 1993,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안암법학』 제1권, 8.

정종섭, 1990, 「대의원리와 주권론의 관계」, 『고시계』, 3.

정재황, 1999, 「기본권 규범간의 우열관계 여부에 의한 논의-프랑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제4호, 국제헌법학회 한국지회.

정종길, 2004, 「프랑스에 있어서의 기본권의 헌법적 보장」, 『공법연구』, 제32집 제5호.

정종길, 2006, 「우리 통치구조 기본원리에 수용된 18세기 후반의 프랑스 헌법사상」, 『세계헌법연구』, 제12권 제1호.

전학선, 2000, 「프랑스헌법재판소와 기본권 보장」, 『외법논집』 제9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조병륜, 1998, 「민주화 정착과 통일을 위한 실질적 국민주권의 구현 방안」, 한국헌법학의 현황과 과제, 『김철수교수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조병륜, 1997, 「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 『고시계』, 10.

한태연, 1992, 「근대헌법에 있어서의 국민주권의 원리」, 『고시연구』 9.

A. Tysenko, 2000, "L'ordre politique chez Sieyes en l'an III", Annales historiques de la Revolution francaise, no 319.

Butler, David and Ranney (eds), 1994, Referendums round the world, New york : Macmillan.

Burgelin, P., 1980, *La philosophie de l'existence de Jean-Jacques Rousseau*, Vrin, paris.

Cassier, E., 1991, *Rousseau, Kant, Goethe*, Belin, paris.

\_\_\_\_\_, 1991, *Le problème de J.-J. Rousseau*, Hachette, paris.

\_\_\_\_\_, 1996, *La philosophie des Lumières*, Fayard, paris.

Charles de 1994, Secondal Montesquieu, L'Esprit des lois, Nathan.

Derathé, R., 1979., *J.-J. Rousseau et la science politique de son temps*, paris.

De Lacharrière, R., *Etude sur la théorie démocratiques : spinoza, Rousseau, Hegel, Marx*, Aubier, paris, 1963.

Elisabeth Zoller, Droit constitutionnel, PUF, 2e ed, 1999.

Eric Olivia, Droit constitutionnel : Libertes, Sirey, 1998.

Groethuysen, B., *Philosophi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Gallimard, paris, 1956.

\_\_\_\_\_, *J.-J. Rousseau*, Gallimard, paris, 1960.

J.J. Chevalier, 1993, Histoire de la pensee politique, Payot & Rivages.

J.J. Rousseau, 1996, Du contra social, classique Hachette.

J.J. Rousseau, 1964, Discours sur l'Origine et les Fondements de l'inegalite parmi les hommes, dans oeuvres completes, Tome III, Gallimard.

J.J. Rousseau, 1991, Ecrits politiques, Livre de Poche.

Josowic, Larissa, 2003, Partizipation in Lokaler Demokratie, Köln, S. 18f.

Louis Favoreu et 1998, autres, Droit constitutionnel, Dalloz.

Louis Althusser, 1992, Montesquieu La politique et l'histoire, PUF, 7e ed., .

Leduc-Fayette, D., 1981. *J.-J. Rousseau et le mythe de l'autiquité*, Vrin, paris.

Paul Hoffmann, 1996, Theories et modeles de la liberte au XVIII siecle, PUF.

Philippe Ardant, 1995, Institutions politiques & Droit constitutionnel, L.G.D.J., 7e édition.

P. Pasquino, Sieyes et 1998, l'invention de la Constitution en France, Odile Jacob.

Simone Goyard-Fabre, 1996, Elements de philosophie politique, Armand Colin.

Lucien Jaume, 2002, "Sieyes et le sens du jury constitutionnaire : une reinterpretation", *Historica constitutional*, no.3.

Masters, R.-D., 1968, *The Political Philosophy of Rousseau*, Princeton.

Mouvement 2004, du droit public, Melanges en l'honneur de Franck Moderne, Dalloz.

Montesquieu, 1964, *L' Esprit des lois*, Seuil, paris.

M. Troper, 2001, "Sieyes et le jury constitutionnaire", dans Melanges Pierre Avril, Montchrestien.

Millet, L., 1966, *La pensée de Jean-Jacques Rousseau*, Fayard, paris.

Pierre Gaxotte, 1975, La Revolution Francaise, Libraire Arthème Fayard.

Robert Derathe, 1995, Jean-jacques Rousseau et la science poltique de son temps, Vrin, 2e ed.

Stéphane Rials, 1988, Le mystère des origins, la Déclaration de 1789, Droits, n° 8.

Stephane Rials, 1988., Le mystere des origins, la Declaration de 1789, Droits, n° 8.

Stephane Rials, 1991, "Sieyes, la deliberation sans la prudence", Droits, no 13.

Shklar, J.-N., 1969, *Men and Citizens. A study of Rousseau's social Theory*, Londres, Cambridge.

Strarobinski, J., 1971, *J.-J. Rousseau Rousseau La transparence et l'obstacle* Gallimard, paris.

Tom Burns, 2000, *The Future of Parliamentary Democracy: Transition and Challenge in European Governance*.

# Cette signification contemporaine des idées de la Constitution française à la fin de XVIII ième siècle

**Chung, Jong-gil**  
(Kyungki University)

## Resume

Selon cette tradition, la doctrine de la souveraineté nationale postulerait que le titulaire de la souveraineté est la nation, c'est-à-dire une entité tout-à-fait abstraite, qui n'est pas composée seulement des hommes vivant sur le territoire à un moment donné, mais qu'on définit en prenant en compte la continuité des générations ou un intérêt général qui transcenderait les intérêts particuliers. Comme il s'agit d'une entité abstraite, elle ne pourrait évidemment pas exercer la souveraineté. La démocratie directe impossible. Elle ne peut vouloir que par ses représentants. Elle ne peut d'ailleurs même pas les choisir, puisqu'elle n'a pas pour éléments des hommes réels. Elle est donc contrainte de confier ce soin à certains hommes. Le suffrage n'est pas un droit, mais une fonction confiée par la nation. Elle ne doit pas

d'ailleurs être confiée à tous, mais à ceux qui sont capables de l'exercer et il se peut que seuls en soient capables certains, notamment parmi ceux qui, possédant des biens ou exerçant une profession ou payant des impôts, ont un intérêt à défendre. Une fois élus, les représentants, qui ne représentent par leurs électeurs, mais cette nation abstraite ne doivent évidemment être soumis à aucun contrôle. La souveraineté nationale entraînerait donc des conséquences symétriquement inverses de celles que l'on suppose à la souveraineté populaire :

- refus de la démocratie directe ou semi-directe.
- théorie de l'électorat-fonction et possibilité du suffrage restreint,
- prohibition du mandat impératif.

Au contraire, la doctrine de la souveraineté populaire enseignerait que la souveraineté appartient au peuple, conçu comme l'ensemble des hommes vivant sur un territoire donné. Ce peuple serait donc un être réel. Il peut donc exercer lui-même sa souveraineté. La doctrine de la souveraineté populaire serait donc compatible avec la démocratie directe. Cependant au cas où il apparaîtrait que cette démocratie directe est peu praticable, le peuple pourrait déléguer l'exercice de la souveraineté. Mais comme le peuple est être réel, il est parfaitement capable d'avoir et d'exprimer une volonté distincte de celles des gouvernements. Tous ceux qui composent le peuple peuvent et ont le droit de choisir ces gouvernements et de contrôler leurs actions. Aussi, la doctrine de la

souveraineté populaire implique-t-elle trois conséquences :

- le principe de l'électorat-droit, c'est-à-dire le suffrage universel,

-des éléments de démocratie directe, c'est-à-dire l'institution du referendum,

-le mandat impératif.

Ainsi, les constituants procéderaient toujours a un choix fondamentale entre deux doctrines de la souveraineté. Ce choix presenterait d'ailleurs un caractere idéologique marque : la doctrine de la souveraineté populaire serait démocratique et progressiste, la doctrine de la souveraineté nationale conservatrice. Cette formule, reproduite a l'article 1 de la Constitution coréenne de la 1987, entrainerait ainsi certaines des conséquences de la souveraineté nationale et certaines des conséquences de la souveraineté populaire.

**Keywords** : souveraineté nationale, souveraineté populaire, paticipante démocratie, sémi-représentif, Constitution coréenne.